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영등포 제3선거구,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도문열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, 산학협력시설, 국제금융오피스 및 이를 지원하는 시설 등이 필요하나, 기부채납 가능 공공시설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성 있는 업무활동 위한 기반 마련 필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